

#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42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5. 9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1991. 6. 19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 제13390호)의 제정시행과 함께 종전의 관인규정이 폐지되었기에 고성군공인조례중 상위규정과 상충된 조항을 개정코자함.

## 2. 주요골자

군본청의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종전의 관인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함.(안 제4조 1항)

## 3. 참고사항 .

○ 사무관리규정 (1991.6.19. 대통령령 제13390호)

## 4.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#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"관인규정(대통령령 제4722호)"를 "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 제13390호)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4조(공인의글씨및규격)①군본청의 공인 (외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)의 글씨와 규격은 <u>관인규정 ( 대통령령 제4722호 )</u>을 준용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4조(공인의글씨및규격)①----- ----- ----- <u>사무관리규정 ( 대통령령 제13390호 )</u>을 준용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